# ======= 【 기술보호와 법 】 ======== << 창업 꿈나무가 알아두어야 할 법제도 >>

# I. 창업의 의의

## 1. 창업의 개념

#### (1) 개념

- 창업은 기업을 설립하여 새로운 영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.
- 기업은 그 형태가 어떤 것인지 묻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기업이든 새로운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면 창업의 범위에 속한다.

#### (2) 형식

- 창업은 창업자 개인이 단독으로 자영업을 하는 경우와 2인 이상이 동업을 하는 경우 및 회사 등의 법인 설립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

## 2. 창업의 형태

- 창업자가 단독의 개인기업으로 창업하는 경우와 타인과 함께 동업하여 창업하는 경우 및 법인을 설립하여 창업하는 경우로 구분된다.
- 개인이 단독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도 기업의 형태를 개인기업으로 할 것인지, 1인 설립이 가능한 회사법인으로 창업할 것인지 정하여야 한다.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도 기업의 형태를 회사법인 형태로 할 것인지도 정하여야 한다.

# Ⅱ. 기업의 형태

## 1. 개인기업

#### (1) 특징

- 창업자가 단독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에 개인기업으로 창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인 창업이 가능한 회사법인에 의한 창업도 가능하다.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는 창업자의 판

======= 【기술보호와 법】======== 단에 다르는 것이다.

- 개인기업 형태의 창업은 창업자 스스로 영업의 주체가 되어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다. 흔히 '자영업'이라고 한다.

#### (2) 장점

- 창업절차가 간단하고 창업비용도 적어 비교적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다.
- 창업하는 기업 경영에 관한 방침과 계획을 창업자가 자유롭고 신속하게 수립하여 집행할 수 있다.
- 영업 이익도 전부 창업자 자신에게 독점적으로 귀속되며, 결산 처리에 있어서도 대차대조 표와 회계장부를 작성해야 하나, 법인의 경우와 같은 엄격한 형식이 요구되지 않는다.
- 창업 후 영업의 양도도 창업자가 단독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.

#### (3) 단점

- 기업경영에서 발생하는 책임과 손실 전부 창업자에게 귀속되며, 영업상 채무에 대해서도 창업자가 단독으로 직접 무한 책임을 진다.
- 자본금 조달에 창업자 개인 능력에 따른 한계가 있을 수 있다.

#### (4) 창업절차

- 창업자가 개인기업의 형태로 창업하는 경우, 자기 소유 또는 임차한 점포나 사무실에서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세무관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.
- 창업자가 미성년자나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무능력자 보호를 위한 민법 일반 원칙에 따라 창업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거나 법정대리인 에 의하여야 한다.

### 2. 회사 - 주식회사

#### (1) 의의

- 주주의 출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자본금을 그 존립의 기초로 하며,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회사의 설립시나 신주 발행시 자신이 이니수한 주식에 대한 출자의무를 이행한 후 회사 채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아무런 책임을지지 않는 전형적인 물적 회사이다.

#### (2) 조직과 운영

#### 1) 주주

# ======= 【 기술보호와 법 】 ========

- 주주는 주식회사의 사원으로서 주식의 소유자이다.
- 주주는 자신이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에 대한 출자의무만 부담하고, 회사 채무에 대하여 는 책임을지지 않는다.

#### 2) 주식회사의 기관

- 주주총회는 회사의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주식회사에서 필요기관이다.
- 이사회와 감사기관은 회사규모에 따라 다르다. 자본금 10억워너 미만의 소규모 회사에는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으로 이사 1명이나 2명을 둘 수 있으며, 감사는 임의기관으로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. 그러나 자본금 10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의 중규모회사에서는 이사회와 대표이사 또는 집행임원을 두어야 하며 감사기관으로 감사 또는 감사위원 회 중 하나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다라 설치하여야 한다.

#### 3) 이사

- 중규모 및 대규모 주식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.
- 이사 전원은 이사회를 구성하여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, 대표이사 또는 집행임원 등 업무집행에 대한 감시를 한다.
-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.
- 상장회사는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. 특히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,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. 이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.
- 대표이사는 대내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다. 집행임원은 대표이사에 갈음하여 이사회의 감독 아래 회사의 업무집행을 전담하는 자를 말한다.

#### 4) 감사

- 감사와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고, 언제든지 이사에 대해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.

#### 5) 이익배당

- 주식회사는 주주에게 이익배당을 하여야 한다.
- 주식배당 : 이익배당을 주식을 새로 발행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. 주식배당은 이익배당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. 주식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.

## ======= 【 기술보호와 법 】 =======

#### (3) 회사의 설립

- 주식회사는 자본을 중심으로 하므로 회사 설립에서 자본의 형성과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자본형성절차와 설립경과 조사절차가 요구된다.

- 주식회사 설립사무는 발기인이 집행하는데, 발기인이 2인 이상인 경우 발기인조합을 구성 한다.
- 발기인조합은 회사가 성립되면 그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해산한다.

#### 1) 발기인

- 발기인은 주식회사 설립시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이며 회사 설립의 사무를 집행한다.
- 발기인의 수는 1인이면 되고, 발기인의 자격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발기인이 될 수 있다.

#### 2) 정관의 작성

-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먼저 발기인이 법정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.
-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근본규칙으로 일정한 형식을 갖춘 것을 말한다.

#### 3)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

- 목적, 상호,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, 액면주식의 경우 1주의 금액, 회사의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, 본점의 소재지,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, 발기인의 성명·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
- 목적 : 회사가 수행할 영업의 범위를 말한다.
- 상호 : 주식회사라는 문자가 포함되어야 하며, 그 외 보험·은행 등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는 상호 중에 그 내용을 포함하는 문자도 있어야 한다.
- 발행주식의 총수 : 회사가 성립 후 존속 중에 발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의 총수를 말한다.
-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하고 균일하여야 한다.
-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: 회사가 공고를 할 때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 간신문에 할 것인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원시 정관으로 기재하게 한 것이다. 전자적 방법은 공고할 사항을 당해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 지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.

#### 4)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

- 정관에 기재하면 회사의 법률관계에서 그 기재한 대로 효력이 발생하고, 기재하지 않으면

======= 【 기술보호와 법 】 ========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 사항이다.

#### (4) 상호

- 상인이 영업활동에서 자기의 영업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을 말한다.
- 자연인인 상인은 자기의 성명 이외에 자신의 영업활동을 표시하기 위하여 상호를 사용하며, 회사 기업의 경우에는 회사의 명칭이 상호가 된다.
- 상호는 영업의 동일성과 독립성을 표시하며, 영업에 관한 명성과 신용을 나타내는 것이다.
- 상호 선정의 자유 : 상인이 상호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성명 기타 명칭으로 상호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.
- 회사의 상호에는 회사종류를 나타내는 주식회사 등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.
- 은행, 보험, 증권 등 특수한 영업을 하는 회사는 그 상호에 은행, 보험, 증권 등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.
- 회사가 아닌 상인은 상호 중에 회사임을 나타내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.
- 개인상인의 상호는 그 등기 여부가 상인자유이다. 회사의 상호는 회사의 설립등기사항으로 반드시 등기를 하여야 한다.

#### (5) 주주총회

# Ⅲ. 창업

#### 1. 창업 일반 절차

#### (1) 사업계획서 작성

- 창업을 하는 경우에 창업자가 창업 아이템을 어떻게 구체화하여 수익성을 창출할 것인지 그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기술하는 것이다.
- 사업의 비전과 목적, 조직, 성장잠재력, 시장현황과 변화 추이, 제품과 마케팅 등의 사업전략과 구체적 실행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. 이는 사업의 자가진단 수단이자대외적으로 각종 지원을 확보하는 근거가 된다.

#### (2) 사업계획서의 중요성

- 사업계획서의 용도는 대내적 목적과 대외적 목적으로 구분된다.

======= 【 기술보호와 법 】 =======

- 대내적으로는 사업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사업의 현안과제를 점검하고 내부 역량을 효과적 으로 결집하는 수단이 된다.

- 창업자는 창업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함으로써 창업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창업 비용을 절약하고 창업의 시행착오와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여 사 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.
- 대외적으로는 금융이나 투자 등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또는 정부나 지자체, 신용보증, 기술보증 등 각종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으로 이용된다.

#### (3) 기재사항

- 사업의 아이템과 창업의 목표, 경영조직과 앞으로의 생산·판매·자금조달 등의 각종 계획, 미래 발전 방향 등 당해 기업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므로 기재사항을 체계적으로 일목요 연하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
#### 2. 창업기업형태의 구분

#### (1) 벤처기업의 창업

- 벤처기업은 창업의 위험성이 크고 성공 가능성은 낮지만 창업하여 성공할 경우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첨단 신기술이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기술집약적 신생중소기업을 말한다.
- 벤처기업에 대해 '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'은 각종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.
- 벤처기업으로 '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'에서 정하는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기업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으로부터 벤처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.

#### (2) 인터넷창업

- 인터넷 대중화로 인터넷 창업이 많아지고 있다.
- 분야로는 인터넷 쇼핑몰, 정보 및 서비스 판매, 인터넷 교육, 인터넷 금융, 인터넷 출판, 인터넷 방송, 인터넷 광고 등 다양하고 독창적인 창업이 많다.

#### (3) 인수창업

- 창업자가 자신의 아이템으로 새로 영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, 타인의 영업을 인수하여 창업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. 이를 인수창업이라고 한다.
- 기존 영업에 관한 시설이나 권리, 노하우 등을 승계하여 창업에 소요되는 위험 부담과 노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.

# ======= 【 기술보호와 법 】 ========

#### 1) 영업인수

- 영업을 하던 양도인으로부터 그 영업을 인수하여 창업을 하는 것이다.
- 인수창업을 하기 위해서 영업 양도인과 양수인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-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괄적으로 이전받는 계약이다.

#### 2) 인수의 요건

- 영업의 물적·인적 조직을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 기능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 인적 조직의 승계를 중시하고 있다.
- 따라서 인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영업의 물적 설비를 모두 인수하더라도 기존 종업원들을 전부 해고 하는 경우에는 인적 조직을 승계한 것이 없으므로 영업의 인수로 인정되지 않는다.
- 동일한 사업주로부터 특정 지점의 영업만을 이전받는 것은 영업의 일부 인수로 되지만, 단순한 출장소나 공장 등의 인수는 영업재산의 인수이며 영업의 인수가 되지 않는다.

#### 3) 인수인의 영업재산이전청구권

- 영업인수계약이 체결되면 영업인수인은 양도인에게 인수의 대상인 영업재산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고, 영업양도인은 인수인에게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여 영업재산을 이전하여 야 한다.
- 영업재산의 이전 방법으로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등기, 등록, 인도, 배서·교부 또는 단순한 교수 등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성립 및 효력발생요건 또는 대항요건을 갖추 어야 한다.
- 영업상 비결과 고용관계 등 재산적 가치있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영업 인수인이 양도인과 동일한 지위에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양도인이 개별적으로 전수하거나 구체적으로 소개하여야 한다.
- 영업의 인수에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기존 근로계약관계도 인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어 승계된다. 영업의 인수인과 양도인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승계하지 않는 때에는 실질적인 해고이므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 등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, 불승계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해고는 무효이고,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.

#### 4) 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

- 영업양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동일한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시, 군과 인접한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시, 군에서 10년간 동종의 영업을 하지 못한다.
- 인수인과 양도인 사이에서 경업금지기간을 이 기간보다 더 장기로 하는 특약을 한 경우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.
- 영업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는 인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의무이다.

======== 【 기술보호와 법 】 ========= - 양도인이 영업을 양도한 후에도 인근 지역에서 동종 영업을 계속한다면 그 인수인은 영업 인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, 영업의 인수인이 그 영업 인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.